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8월 13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3.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구성(안 제6조)
- 도지사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을 방문할 수 있음(안 제9조)

-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11조)
- 도지사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안 제12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안 제4조)
  -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구성(안 제6조)
  - 도지사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9조)
- 현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5개(광역시7, 기초98개)이며, 우리나라 주택보급 특성상 앞으로 공동주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조례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끝.